상조회 회칙

1978. 08. 01. 최초제정

2012. 08. 21. 부분개정

2013. 09. 14. 부분개정

2014. 08. 18. 부분개정

2022. 09. 01. 부분개정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본 회는 교직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본 회의 명칭은 대전보건대학교 교직원 상조회라 칭한다.

제3조(위치) 본 회의 사무소는 대전보건대학교 내에 둔다.

제2장 회원

제4조(자격) 본 회의 회원 자격은 대전보건대학교 및 법인 교직원으로 한다. 단, 비전임 교원 및 임시직은 제외한다.

제5조(가입) 본 회의 회원은 본교의 교직원으로 부임한 날로부터 가입된다.

【단. 조교(학과. 행정)는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회원에 가입할 수 있으며. 부임 후 1개월 이내에 가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.】

제6조(기간) 회원의 자격 기간 산정기준은 입회한 날로부터 탈퇴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로 하며 휴직할 경우는 휴직기간을 산정하지 아니한다.

제3장 임원

제7조(구성) ①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.<개정 2022.09.01.>

- 1. 회장 1명
- 2. 부회장 1명
- 3. 이사 5명
- 4. 감사 1명
- 5. 간사 3명(행정간사 1명, 사업간사 2명)
- ②이사의 구성은 교직원 비율에 의하여 구성하며, 임기 만료 시 재구성한다.
- ③이사의 구성인원은 교원 3명, 직원 2명으로 구성한다.<개정 2022.09.01.>
- 제8조(선출 및 임기) ①회장은 총장으로 한다.
- ②삭제<2006.08.17.>
- ③부회장. 이사. 간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
- ④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- ⑤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9조(임무) 본 회의 임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.

①회장 :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한다.

②부회장: 회장을 보좌하며. 회장 유고시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이사: 이사는 임원회에 의안을 제출. 심의하고 임원회의 결과를 전달 반영시킨다.

④감사 : 본 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.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.

⑤간사: 사업계획과 아울러 그 업무를 집행한다.

제4장 사업

제10조(종류) 본 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- ①친목에 대한 사업
- ②회원에 대한 상조금 지급 및 축하. 조문. 위로행사
- ③회원에 대한 금전 대출 및 복지 사업
- ④삭제<2022.09.01.>
- ⑤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할 수 있다.

제11조(집행) 본 회의 사업 및 행사는 예산과 시기 사정 등을 감안하여 임원회의에서 의결. 집행할 수 있다.

제5장 회의

제12조(종류) 본 회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총회와 임원회를 두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.

제13조(회의) ①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- 1. 회칙의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
- 2. 임원의 선출
- 3. 사업과 예산 및 결산 승인
- 4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②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
- 1. 회칙의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
- 2. 사업계획 및 수입·지출, 예산·결산 심의
- 3.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
- 4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14조(소집) ①정기총회: 격년 8월중에 회장이 소집하고. 의장은 회장이 된다.

- ②임시총회 : 회원 2/3이상의 요구가 있거나. 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- ③필요에 따라 수시로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
제15조(의결) ①총회는 제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임원회는 2/3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장 재정

제16조(회비) ①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정기회비와 임시회비 그리고 기타수입으로 충당 한다.

- ②정기회비는 입회한 그 달부터 각 회원당 2.000원씩 봉급 지급일에 회장이 일괄 공제한다.
- ③임시회비는 회칙상 필연적으로 세입이상의 세출이 생길 경우 이를 충당하기 위하여 제2항에 준하거나 그 이상으로 징수 할 수 있고, 애·경사가 발생 시 [별표 1]에 의거 징수한다.

제17조(관리) ①본 회의 수입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회원에게 대여할 수도 있다.

②본 회의 회계 사무는 사학기관 세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.

제18조(회계년도) 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8월 1일부터 익년 7월말로 한다.

제19조(장부비치) 본 회는 다음 장부를 비치한다.

- 1. 회원명부, 임원명부
- 2. 수입부. 지출부. 금전출납부
- 3. 대출장부
- 4. 예산·결산에 관한 서류
- 5. 퇴직금 지급부
- 6. 각종 회의록
- 7. 세입ㆍ세출 증빙서
- 8. 회칙 및 규칙
- 9. 기타 필요한 서류

제7장 상조금지급

제20조(종류) 본 회에서 지급하는 상조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①축의금

- 1. 결혼 : 회원본인, 회원자녀
- 2. 회갑: 회원본인. 회원의 부모. 회원배우자의 부모 (단, 상조회원 가입 후 20년 이상 근무한 교직원이 정년(명예)퇴직 시 회원 본인 회 갑 축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별금으로 지급한다.)
- ②부의금: 사망(본인, 부모, 배우자, 자녀 및 배우자 부모)
- ③퇴직금 : 회원이 퇴직 시 다음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.<개정 2022.09.01.>
- 1. 5년미만 : {개인총불입액+(개인총불입액× 근무년수/100)}× 1.0
- 2. 5년이상 10년미만 : {개인총불입액+(개인총불입액× 근무년수/100)}× 1.2

- 3. 10년이상 : {개인총불입액+(개인총불입액× 근무년수/100)}× 1.4
- ④위로금 : 회원이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6일 이상 입원 시 50,000원 범위 내에서 위로금을 지급한다.
- ⑤회원 애사 시 상조회 간사업무 수행비 및 운전기사 수고비. 교통비를 지급하며.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.
- 1. 간사 업무 수행비 : 본교 교직원 여비규정 별표1 여비지급 구분표의 제2호를 적용하여, 별표2 국내여비 정액 표를 근거로 하여 지급한다. 단 운임비는 사용 영수증에 근거하여 지급할 수 있다.
- 2. 상조회 조문차량을 학교에서 지원 받는다. 단 대전 시내일 경우 상조회 조문차량은 지원하지 않는다.
- 3. 행정간사 업무수당을 월 50.000원 지급한다.
- **제21조(지급)** 상조금의 지급일은 원인 발생 1주일 전·후에 회장의 승인을 받아 [별표 1]에 의거 지급한다.

제22조(대상) 상조금의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다.

- 1. 회원, 부모, 배우자, 자녀 및 배우자 부모
- 2. 대상자 확인은 증빙서류를 원칙으로 하되, 회원이 공인하는 사실 증명이나 구두를 근거로 할 수 있다.

제8장 대출 및 복지사업

제23조(대출) 대출은 본 회칙에 의거 회장의 승인을 받아 대출한다.

제24조(대출금) ①대출한도금액은 500만원으로 하며, 연금법상 퇴직일시금을 초과할 수 없다

②대출금 보증인 선정(설정)은 100만원 미만은 보증인을 설정하지 아니하고,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내 대출시 교내 교직원 상조회원 중에서 1인을 보증인으로 선정(설정)하고 대출하다.

제25조(대출기간) ①대출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.

②회원의 공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2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며. 필요시 재 대출을 받는다. 단. 대출회원이 많을 시 재 대출을 제한한다.

제26조(상환) ①원금은 대출일수/대출금의 공식에 의하여 분할 상환한다.

- ②{원금+(원금× 상환이율/100)/상환회수}=상환액
- ③대출금 상화을 중도에 일시 상환을 할 때는 다음 공식에 의하여 상환하다.

※공식: 원금-기상환금액(원금)× 이율/대출월수 = 일시상환액

제27조(금리) ①대출금에 대한 금리는 교원공제회 대출금리를 적용한다.

(단. 1월 미만일 경우 1월로 계산한다.)

- ②대출금리 적용 시기는 회기 시작 월의 금리로 한다.
- ③대출금액 이자는 봉급지급일에 회장이 봉급에서 일괄 공제한다.

제9장 보칙

제28조(경과조치) 종전의 회칙에 의하여 기 대여된 교직원도 개정된 금리를 적용한다.

부 칙

- 1. 본 회칙은 1978. 8. 1.부터 시행한다.
- 1.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으로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.
- 1. 본 회칙은 1990. 8.17. 개정하여 8. 25.부터 시행한다.
- 1. 본 회칙은 1991. 8.16. 개정하여 8. 24.부터 시행한다.
- 1. 본 회칙은 1994. 8.19. 개정하여 8. 25.부터 시행한다.
- 1. 본 회칙은 1999, 8.06. 개정하여 1999, 08, 01.부터 시행한다.
- 1. 본 회칙은 1999. 9.15. 개정하여 1999. 09. 22.부터 시행한다.
- 1. 본 회칙은 2000. 8.25. 개정하여 2000. 08. 26.부터 시행한다.
- 1. 본 회칙은 2001. 8.02. 개정하여 2001. 08. 03.부터 시행한다.
- 1. 본 회칙은 2002. 8.19. 개정하여 2002. 08. 19.부 터 시행한다.
- 1. 본 회칙은 2003. 8.06. 개정하여 2003. 08. 06.부터 시행한다.
- 1. 본 회칙은 2004. 8.20. 개정하여 2004. 08. 20.부터 시행한다.
- 1. 시행일 : 이 개정 회칙은 1996. 8. 16.부터 시행한다.
- 1. 시행일 : 이 개정 회칙은 1996. 9. 26.부터 시행한다.
- 1. 시행일 : 이 개정 회칙은 1998. 8. 19.부터 시행한다.
- 1. 시행일 : 이 개정 회칙은 1999. 8. 01.부터 시행한다.
- 1. 시행일 : 이 개정 회칙은 1999. 9. 22.부터 시행한다.
- 1. 시행일 : 이 개정 회칙은 2000. 8. 26.부터 시행한다.
- 1. 시행일 : 이 개정 회칙은 2001. 8. 03.부터 시행한다.
- 1. 경과조치 : 현재 가입된 조교(행정조교 포함)는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2001.8.31.까지 탈퇴할 수 있으며. 가입된 회원은 퇴직을 하지 않는 한 탈퇴를 할 수 없다.
- 1. 시행일 : 이 개정 회칙은 2002. 1. 01.부터 시행한다.
- 1. 시행일 : 이 개정 회칙은 2002. 8. 19.부터 시행한다.
- 1. 시행일 : 이 개정 회칙은 2003. 8. 06.부터 시행한다.
- 1. 시행일 : 이 개정 회칙은 2004. 8. 20.부터 시행한다.
- 1. 시행일 : 이 개정 회칙은 2005. 8. 18.부터 시행한다.
- 1. 시행일 : 이 개정 회직은 2007. 8. 18.부터 시행한다.
- 1. 시행일 : 이 개정 회칙은 2012. 8. 21.부터 시행한다.
- 1. 시행일 : 이 개정 회칙은 2012. 9. 14.부터 시행한다.
- 1. 시행일 : 이 개정 회칙은 2014. 8. 18.부터 시행한다.
- 1. 시행일 : 이 개정 회칙은 2022. 9. 1.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상조회 공제액

구 분	항 목	지급금액		
		회원부담금	상조회부담금	계
회 갑	부모 회갑	3,000	0	3,000
	회원본인 회갑	3,000	0	3,000
	교직원 정년(명예)퇴직시 전별금	3,000	0	3,000
	배우자 부모 회갑	2,000	0	2,000
사 망	회원 및 배우자 사망	10,000	0	10,000
	부모 사망	4,000	0	4,000
	배우자 부모 사망	3,000	0	3,000
	자녀 사망	3,000	0	3,000
결 혼	회원 결혼	3,000	0	3,000
	자녀 결혼	2,000	0	2,000
위 로	위로금		6일 이상 입원시	50,000
퇴 직	상조회 탈퇴금		상조회칙 제20조참조	

※ 지급액 = 지급금액× 회원수 이며, 위로금 및 퇴직금은 제외

상조회 탈퇴 시 탈퇴금 지급표

회원이 퇴직 시 다음에 의하여 탈퇴금을 지급한다.

1. 5년미만 : {개인총불입액+(개인총불입액× 근무년수/100)}× 1.0

2. 5년이상10년미만 : {개인총불입액+(개인총불입액× 근무년수/100)}× 1.2

3. 10년이상 : {개인총불입액+(개인총불입액× 근무년수/100)}× 1.4